

부동산 중개피해 사전예방 및 신고 절차

○ 중개피해 사전예방 절차

< 매매 및 임대차 등 계약대상물 확인 >

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, 개설등록증 등 확인



< 실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여부 확인 >

주민등록증, 등기권리증,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 등



<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확인 및 설명서 수령 >

기본기재사항, 세부기재사항, 중개수수료부분 확인



< 대금지급은 반드시 실 소유자(등기부상 명의) 통장에 입금 >

대리자, 건물관리자, 중개업자 통장 입금 절대 금물



< 최종 챙겨야 할 계약서류 3종 >

계약서,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,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

○ 중개피해 신고 절차

< 불법중개행위 피해발생시 증빙서류 확보 관할구청에 신고 >

수수료영수증, 계약서류,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등



정식 중개업자의 위법·과실 : 손해배상보증보험(1억원 이하)

무자격 중개업자의 불법중개 :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

※ **무료법률상담서비스** :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)



< 기관별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>

자치구 : 위법확인 → 고발(결정·판결) → 청문 → 등록취소,

업무정지, 과태료부과, 주의·시정 등 경미한 처분

서울시 : 사법기관(결정·판결문) → 청문 → 자격취소, 자격정지